

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공사재개 공고

우리구 장위동 68-37번지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공사재개 통보서가 제출되어, 동법 시행령 제55조4에 의거 공사재개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월 21일

성 북 구 청 장

1. 사업의 명칭 :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사업 시행자 :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성북구 화랑로 248 10층 1001호)
3. 사업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-37 일대(91,362㎡)
4. 내용 및 사유
 - 가. 내 용 :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37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공사재개 통보
 - 나. 재개사유 : 본공사 착공에 따른 공사재개
 - 다. 재 개 일 : 2025.12.31.
 - 라. 준 공 일 : 2030.3.(예정)
5. 기타사항 :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주거정비과(☎02-2241-2837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